

2026년 전주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2026년 전주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전 주 시 장

I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4명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진압, 출동 경찰 인계 및 사건 후속처리 전반 ■ 민원인 안내 등 대민업무 ■ 청사 내 행사 시 주차관리, 질서유지 지원 ■ 청사 내 공무원 및 민원인 보호 ■ 근무구역 내 기타 질서유지 및 진압 활동 ■ 그 밖에 전주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전주시 본청, 의회, 사업소 등

II 채용 일정

원서접수	시험 구분	시험(접수)일자	합격자 발표
'26. 10. 1.(목) ~ 10. 5.(월)	(1차) 필기시험	'26. 10. 17.(토)	'26. 10. 22.(목)
	(2차) 서류전형	'26.10.26(월) ~ 10.28.(수)	'26. 10. 30.(금)
	(3차) 체력시험	'26. 11. 5.(목)	'26. 11. 11.(수)
	(4차) 면접	'26. 11. 18.(수)	'26. 11. 25.(수) *최종합격자 발표

※ 단계별 시험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III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18세 이상인 자(2008.12.31. 이전 출생자)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60세 미만)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이전부터 시험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험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은 공개경쟁 채용 최종시험일입니다.

IV 응시원서 접수

1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5.(월)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에 맞춰 채용사이트 개설 및 별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및 취소 가능(접수마감 이후 불가)
- 사이트에 등록한 가산특전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본 제출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및 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 본인이 직접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신분증과 함께 시험 당일 지참 ※ 미지참 시 해당 시험 응시 불가

2 제출서류

※ 편철 하지 않고 낱장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 출 서 류	대상자	비 고
1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자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작성 및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자	
	■ 취업지원증명서 1부	해당자	
	■ 무도 단증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다자녀)		
2	■ 주민등록초본 1부 (원본) - 주민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전체 포함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기간 별도 공지
	■ 취업지원증명서 1부 (원본) ※ 가점사항 해당시		
	■ 무도 단·품증 1부 (원본) ※ 가점사항 해당시		
3	■ 일반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하며,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시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문의	최종합격자	제출기간 별도 공지
	■ 등록원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3부		
	■ 신분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V

가산특전

□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대상자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법령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필기, 체력, 면접시험 적용)
자격증(단증*) 소지자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참고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무도 4단 이상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 적용)
	무도 2~3단 단증	과목별 만점의 3% (필기시험 적용)
다자녀 가정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면접시험 만점의 1~5%

- 가산특전은 단계별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적용(다자녀 제외)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단증) 소지자 가점은 별도 합산
- 가산특전 취득 기준일 : 당해 원서접수 마지막 일
- 가산특전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기간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원본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별도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국가보훈부 ☎ 1577-0606)
- 취업지원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소수점 이하 버림) 각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증(단증) 소지자

- 자격증 및 단증 소지 가산점은 1개 부문만 인정
- 무도 단증은 1종목만 인정
- 무도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26년도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공고한 단체를 준용함(붙임 참고)

VI 시험 방법

1 필기시험

- 시험장소 : 전주시 관내 학교
- 시험일시 : 2026. 10. 17.(토) ※ 추후 필기시험 공고시 세부 장소 및 시간 안내
- 과 목 : 인성검사 + 국어,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인 성 : 200~250문항
 - 필 기 : 각 20문항(100점 만점) / 4지 택 1형 / 총 40문항,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100분(인성검사 60분, 필기시험 40분)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인성검사 적합자 중, 필기시험 고득점자(과목별 40%미만 득점자 제외) 순으로 선발
 - 합격 예정 인원의 5배수(20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초과 선발)

2 서류심사

- 대 상 : 필기시험(1차시험) 합격자 전원
- 제출기간 : '26. 10. 22.(목) ~ '26. 10. 23.(금) 18:0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심사
- 합격자 결정 : 지정된 기간에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응시요건 적격자 합격 처리 (서류제출 별도 안내)

3 체력시험

- 대 상 : 필기시험(1차시험) 및 서류심사(2차시험) 합격자
- 시험일시 : 2026. 11. 5.(목) 14:00
- 시험장소 : 국민체력100 전주체력인증센터(완산구 백제대로 310, 화산체육관 2층)
- 종 목 : 악력,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 각 10점(40점 만점) /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 이하 득점시 불합격
 -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붙임 참고
- 합격자 결정
 - 체력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예정 인원의 1.5배수(6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초과 선발)
 - ※ 1종목 이상 1점 이하 득점 시 불합격

○ 평가점수

종목	성별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좌우 악력 (kg)	남	36 이하	37~39	40~42	43~45	46~48	49~51	52~54	55~57	58~60	61 이상
	여	22 이하	23~25	26~28	29~31	32~34	35~37	38~39	40~41	42~43	44 이상
교차 윗몸 일으키기 (회/1분)	남	31 이하	32~35	36~39	40~42	43~45	46~48	49~51	52~54	55~57	58 이상
	여	22 이하	23~26	27~30	31~34	35~38	39~42	43~46	47~50	51~54	55 이상
20m 왕복 오래달리기 (회)	남	34 이하	35~38	39~43	44~48	49~54	55~59	60~64	65~69	70~74	75 이상
	여	21 이하	22~26	27~30	31~32	33~35	36~39	40~43	44~46	47~49	5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189 이하	190 ~198	199 ~206	207 ~213	214 ~220	221 ~227	228 ~233	234 ~239	240 ~245	246 이상
	여	135 이하	136 ~143	144 ~150	151 ~157	158 ~163	164 ~168	169 ~173	174 ~177	178 ~181	182 이상

※ 악력 측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목별 체력시험 측정방법은 붙임 참고

4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1차시험), 서류심사(2차시험), 체력시험(3차시험) 합격자

○ 면접일시 : 2026. 11. 18.(수)

○ 면접장소 : 전주시청 ※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면접시험 공고시 안내

○ 평가항목

- | | |
|--------------------|----------------|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각 20점(100점 만점) / 평가항목 중 2개 이상 40%(8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5 예비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내 예비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1)취업지원대상자, 2)다자녀 지원대상자, 3)체력점수, 4)필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대상 신원조회 등 실시 (서류제출 별도 안내)
 - ※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에 의한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자는 임용예정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성적순으로 임용 예정

VII 유의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응시자격의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일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음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예정
- 선순위합격자가 결격사유로 합격 취소된 경우 또는 본인이 채용을 포기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측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고, 체력측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된 서류 원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발표일 이후 14일부터 21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231)로 문의 바람(평일 09:00~18:00)

붙임 1 체력시험 종목별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스메들리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①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 둘째 마디로 악력계를 잡는다. 손잡이가 맞지 않을 때는 조절나사로 알맞게 조정한다. ② 측정하는 팔은 곧게 펴고 몸통과 간격을 15도 유지하며 이 때 반대편 팔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다. ③ '시작' 신호와 함께 최대한 힘을 주어 악력계 손잡이를 당기고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좌우 교대로 2회씩 실시하며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다. ■ 파울 기준 - 손에 힘을 줄 때 자세와 달라지는 경우(팔을 내려 악력계가 몸에 닿거나 반대로 팔을 올리는 경우,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 - 맨 손이 아닌 장갑, 수건, 휴지, 송진가루 등을 사용한 경우
교차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횟수: 1회 ■ 측정 방법 ① 피검자는 장비에 앉아 양발과 무릎을 고정하고 등과 머리를 대고 눕는다. ② 양팔은 십자모양으로 교차하여 가슴 앞에 모으고 두 손은 어깨 위로 올린다. ③ '시작' 신호와 함께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허벅지(넓적다리)에 닿도록 하고 이 때 1회로 인정한다. ④ 다시 등이 바닥에 닿도록 눕고 이를 연속으로 1분 동안 실시하여 성공한 횟수를 기록한다. ■ 파울 기준 : 파울 시 해당 개수 불인정 - 과도하게 팔꿈치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반동으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 과도하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는 반동으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 손바닥이 어깨에서 떨어지거나 옷을 잡고 일어나는 경우 - 등의 상부까지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 - 양쪽 팔꿈치가 양쪽 허벅지(넓적다리)에 닿지 않는 경우

종 목	측정방법 등
왕복오래 달 리 기 (회)	■ 측정 장비: 왕복오래달리기 측정기, 스피커 ■ 측정 횟수: 1회 ■ 측정 방법 ① 피검자는 출발선을 밟지 않고 서서 준비한 후 신호음이 울리면 출발한다. ② 측정이 시작되면 건너편 센서 우측에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되고 좌측에 현재 뛰고 있는 횟수가 표시된다. ③ 피검자는 측정 장비에 표시되는 시간이 0초로 표기되기 전에 센서를 통과한다. ④ 센서를 통과한 후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음이 울리면 건너편으로 뛰어가 센서를 통과한다. ⑤ 제한시간 안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점에서 신속히 뒤로 돌아 뛰도록 한다. 단 반환점을 넘어가야 1회에 한해 돌아 뛸 수 있다. * 반환점: 18m ⑥ 이동을 두 번째 못한 경우 측정 종료하며 피검자가 2회 연속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1차 경고 횟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 파울 기준 : 누적 2회 파울 시 측정 종료 - 출발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는 경우(부정 출발) -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센서를 양발이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반환점을 통과 못한 경우는 누적 1회 종료
제 자 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안전매트, 제자리멀리뛰기 측정기 또는 측정매트 ■ 측정 횟수: 2회 ■ 측정 방법 ① 피검자는 출발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 측정기 위에 선다. ② 서서 팔이나 몸, 다리로 충분히 반동을 주어 준비가 되면 최대한 멀리 뛴다. ③ 출발선에서부터 신체부위가 닿은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 거리를 측정한다. ④ 측정은 2회 실시하며 가장 좋은 기록을 1cm 단위로 기록한다. ■ 파울 기준 : 파울 시 해당 측정값 불인정, 측정 횟수 차감 - 선을 밟거나 발을 두 번 구르는 경우(이중 도약 불가) - 뛰기 전 반동을 줄 때 발바닥이 떨어지는 경우 - 양발로 동시에 점프 또는 착지하지 않는 경우 - 착지 후 바로 뒤 또는 대각선 뒤로 이동하는 경우(측정매트 안, 밖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기 오작동 및 미작동으로 측정기록에 오류 발생 시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제공함

붙임 2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애국지사의 가족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지침」 제22조(채용시험가점및동점자처리기준)

- ①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 및 「다자녀 가정 우대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별지 제6호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다자녀 가점을 부여한다.
- ②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며, 각전형단계별로 별지 제6호의 채용시험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 ③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제6호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는 해당채용계획에 따른다.
- ⑤ 다자녀가점은 채용공고에 안내하고 법정가점은 동일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4명이상인 경우 채용공고에 반영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3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¹¹⁾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⁴⁸⁾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예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국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예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¹⁾

택견보존회